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16호
- 나. 제 출 자 : 김용술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4.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동 제정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 안 제8조는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활용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과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드론산업은 항공,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재난·방재, 국토조사, 수송, 농·임업, 영상촬영, 취미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드론 산업육성을 위해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2023. 6. 30 고시하였음.
-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드론 안전교육 등은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안전사고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

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